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,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정원 7명(4급 1명, 5급 5명, 6급 1명) 중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21. ~ 9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2023년 10월 15일”을 “2024년 10월 15일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업구조개선과(존속기한: 2024년 10월 15일)

총계	5
일반직 계	5
4급 이하	5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기업구조개선과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<u>2023년 10월 15일까지</u>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.	제23조(기업구조개선과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2024년 10월 15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8